

# 앵커리지 교육청에서 문제 해결 선택권

학 부모님 과 복지 사회 시민 여러분들 께:

앵커리지 교육청의 업무 실행에 관해 문제점이 있으십니까? 교육청의 절차 진행 또는 직원과의 문제점이나 관심사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앵커리지 교육청은 여러분이 지니고 계시는 문제나 관심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 하는데 필요한 몇가지 방법을 저의가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출발점은 문제점을 직면하고 있는 사람이 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령한 면을 감안하여 저희는 여러분께서 어떠한 문제점이든지 교장이나 담당 교육청 행정직원과 해결 하시기를 권장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며, 여러분은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내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시는 국금증을 갖이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염녀됨을 우리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도움이 될 여러 안내를 다음에 제공 했습니다.

카롤 코모, 교육 청장

---

## 앵커리지 교육청 내 문제해결 선택 방법

어떠한 문제나 관심사가 학교에서 일어날 경우에는 몇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언제나 문제의직면 하고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시는게 희망되는 봐 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발생한 문제가 학교내에서 해결점을 찾지 못 할 경우에는 앵커리지 학부모님과 학생에게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책과 절차가 마련되 있습니다. 아래에 나열된 것들이 여러분께서 선택 하실 수 있는 절차일 것입니다.

1. **문제와 관련된 사람에게 가십시오.** 그렇나 만약에 성공 하시지 않으시면, 학교 교장 (또는 부교장/교감, 학생 부장, 또는 담당 교육청 행정직원) 에게 연락 하십시오.
2. 만일에 학교 내에서 문제해결이 가능하지 않으면, 다음 부서로 연락 하십시오:  

초등학교 교육부:	907-742-4254 또는 907-742-4242
중학교 교육부	: 907-0742-4249
고등학교 교육부:	907-742-4256 또는 907-742-4250
3. 만일에 관심사가 특수교육 학생에 관련된 경우에도 다음 부서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특수교육부	: 907-742-3886
중학교 특수교육부	: 907-742-3888
고등학교 특수교육부	: 907-742-3888
또는 특수 교육 행정 담당자:	907-742-4236
4. 만일에 학생통학에 문제라면 **통학서비스부** 907-742-1200 로 연락 하십시오
5. 그 외 교육청 사무국 또는 자문의위원회 등이 도움이 되 것 입니다.

교육 담당, 부 교육 청장 : 907-742-4321  
 이중언어 교육부 : 907-742-4452  
인디안 교육부 : 907-742-4445  
 사회 교육부 : 907-742-4141  
균등교육 기획부(EEO) : 907-742-4130  
소수 민족 교육문제 전문위원회 (MECAC) 또는 앵커리지학부모/교육자 회의(문의  
 연락 번호 907-742-4312) 로 연락 하십시오.

6. 앵커리지 시민 불평절차 양식을 사용 하십시오, 양식은 인터넷으로 **학교 사무실, 교육담당 부청장실, 초등부 담당실, 중등부 담당실, 고등부 담당실, 특수교육부 담당실 또는 교육청장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불평이 교육자료에 관한 일이라면, 시민불평 용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교육자료에 관한 불평이라면, 교육자료에 관해 추가 또는 재평가 요청에 관한  
 것은 별도의 앵커리지 교육청 용지가 **교육과정 과 평가 행정과**에 배치되어 있으니  
 문의 해 주십시오.

7. 앵커리지 시의 **민원조사 센터** 전화 번호 907-343-4461 또는 e-mail [pmbud@di.anchorage.ak.us](mailto:pmbud@di.anchorage.ak.us) 로 연락 하십시오.  
 이 기관은 시에서 허가 받은 기관으로서 교육청에 관한 불평을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여러분의 성함이 비밀로 지켜질 것입니다.
8. **장애자법 센터** 전화 번호 907-565-1002 또는 e-mail [akpa@dlck.org](mailto:akpa@dlck.org) 로 특수 교육에 해당되거나 또는 504 의 대한 불평을 연락 하십시오.
9. 만일에 학생이 **Elmendorf** 또는 **Fort Richardson** 기지 내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군 교육관계국 전화 907-552-2820 로 연락 하세요.

## 앵커리지 교육청 시민 불평 용지

(주의 사항: 여러분께서는 이 시민 불평 절차를 사용하여 앵커리지 교육청 직원이나, 방침이나 절차, 실행 조치 와 절차, 1964 년 Civil Rights Act 내의 개정된 Title VII, 그리고 1972 년의 교육개정법에 속하는 Title IX 등에 반대되는 어느 것이든 불평을 표할수 있습니다.)

이 용지 아래에 지내용데로 불평서에 기입하시고 Superintendent's Office, 5530 E. Northern Lights Blvd., Anchorage, Alaska 99504-3135 앞으로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성명:

주소:

전화 번호:

---

1. 불평 내용의 대상 이나 용건은?

학교/ 소속과

직위

---

2. 이내용은 상대와 논의했습니까?

예:

아니오:

날자:

---

3. 불평은 학교 교장 또는 덕의상관과 논의 됐습니까?

예:

아니오:

날자:

---

불평 사항설명: 모든 중요한 내용을 기입하세요., 예로 사건이 일어난 장소, 관련된 사람의 이름, 일어난 날짜, 당시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그 내용 사실을 알렸는지. 기입 하실 난이 더 필요 하시면, 별도의 용지를 사용 사십시오.

어떻한 규제나 처리를 원하사는지?

서명: \_\_\_\_\_ 날자 \_\_\_\_\_

교육청의 접수 날자: \_\_\_\_\_

이 용지는 전자 통신 사용을 할수없습니다. 기입 후에 프린트를 하신후에 다음의 지시 내용과 같이 교육청장실로 우평으로 보내 주십시오.

---

## 시민 불평 양식에 관한 절차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한 비평을 포함한 의사 표현의 자유는 기본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또한 공평한 법적 절차를 포함한 여러가지 공민권을 행사 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항에서든지 대립 되는 양단의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앵커리지 교육청은 고용인과 또는 고용인 실행에 대한 불평을 처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마련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불평은 비공식 절차를 통해 불평인과 고용인 또는 고용인의 교장 이나 지도주임과의 회의로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공식 불평절차는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불평을 위한 것이며 사건 발생 이후 30 일 내에 접수 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건이 학년말 내에 일어났을 경우에는 공식불평은 학년기간인 6월 30 일 전에 접수 돼야 합니다. 사건 내용이 참작 할 만한 경우에는 마감일자가 연기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식 불평절차가 시작 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든지 만족한

비공식 해결을 이루는데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 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보복적인 행위는 허용되지 않을 것 입니다.

앵커리지 교육청의 고용인, 방침, 실행, 또는 절차에 대한 불평 절차에 관한 안내.

1. 교육청 직원 또는 고용인 실행에 대한 불평을 접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교장이나 그 고용인의 지도주임과의 만남으로 해결책을 찾아 보십시오.
2. 이러한 방법으로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한 어느 경우에는 시민 불평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3. 이 양식은 교육청장 실, 5530 Northern Light Blvd., Anchorage, Alaska 99504-3133, 전화 907-742-4642 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이 불평 해결을 위해 일할 담당 직원과 그 사람의 연락처를 양식 접수 확인과 함께 보낸 사람에게 보내질 것 입니다.
4. 불평을 받은 고용인에게 이 불평의 사본이 전달될 것이며 또한 그 고용인은 불평을 받은 일 부터 10 일 이내에 서류로 적절한 대답을 책임 행정인에게 보내야 하며 또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협조 해야 합니다.
5. 만약에 이 불평이 부서나 현지 직원에서 해결이 나지 않을 경우는 중앙사무실의 담당직원이 이 불평 및 관계되는 물증을 검토하고 당사자들을 면접하여 그 결과 및 추천사항을 교육청장에게 접수 할 것 입니다.
6. 교육청장 또는 지명인은 불평인과 불평을 받은 고용인에게 최종 결정사항을 문서로 알리도록 할 것 입니다. 최종 결정은 신속한 시일 내에 내리도록 하되 정식 불평이 접수된 후 일하는일 4 일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7. 불평을 접수인이 그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교육위원회에 항소 할 수 있습니다.
8. 시민 불평 양식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고용인은 법 또는 고용계약에 의거한 권리를 선택 할수 있습니다. 고용인과 불평인 양자는 선택에 의하여 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변인을 둘 수도 있습니다.
9. 이 절차 외에 추가하여 시민은 시민원조사관 907-344-4461 으로 연락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은 시현장에서 허가를 받은 기관으로 교육청에 대한 불평을 조사하는 곳 입니다. 이 기관에서는 관계된 종업원이나 불평인의 이름은 비밀로 지켜 집니다.
10. 만약에 관심사가 헌법법에 관한 것이라면 교육청은 불평인으로 하여금 교육국장 또는 적절한 기관에 불평을 접수 하는 원리를 인정 합니다.
11. 만약에 불평 제시진행 후 어느 시점에서 불평 제시인이 공식 법정소송을 진행할 의사를 나타내거나 또는 실제로 소송을 제시하면, 교육청의 시민불평 절차는 종결됩니다. 그리고는 교육청은 문제를 교육청 변호인에게 사건을 넘길 것 입니다.

다음 경문은 불평을 접수함을 권장 하는 것도 아니고 권장 하지 않는 것도 않습니다. 그보다는 공식불평 절차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알려드리는 것 입니다.

- 교육청은 이 문제에 관한 나에게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 할수 있음을 알고 있고 자료가 있는 한계 내에서 자료를 제공 할 것에 동의 합니다. 본인은 또한 불평자로서 증언할 요구를 받을 수도 있으며 반대심문에 응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 나의 결의요구가 주의깊게 고려되고 있겠으나, 조치선택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내가 요청한 것보다 더 엄할 수도 더 엄할 수도 있음을 이해합니다. 중대한 상황에서는 이 불평내용에 포함 되 있는 내용을 사용하여 증업원를 해고하는데 원인이 될수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불평이 어느 고용인의 행동에 관한 것이라면 교육청은 본인이 불평한 내용을 복사하여 불평의 대상인에게 제공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불평에 응답 할 기회가 주워 질 것이며, 본인에게는 그 사람의 서면으로 된 응답의 복사가 제공 될 것입니다.
- 만일에 이 사건이 비공식적으로 해결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위원회 심의에 오를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심의는 시 조례 및 공개회의법 절차에 따라 공청회의에서 다루워질 것 입니다. 이 심의 회의에서 내가 불평을 제기한 당사자와 동석할 권한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당사자는 증명을 제시할수 있고 증인을 부를수 있는 대표인을 동행 할 권한이 있으며, 본인과 반대되는 증인을 반대 신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 관한 기록이 남겨 질 것입니다.
- 언제든 불평을 거둘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이 이 불평내용이 충분히 위중하다고 생각 할 시에는 본인이 더 이상 불평을 추구하자 않기로 결정을 했더라도 교육청은 추구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만일에 법적 조치가 진행 된다면, 본인과 상대 쌍방은 법적 진행 조치에서 그내용에서의 보호와 권한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